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redacted] 물품대금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대표자 사내이사 [redacted]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대표자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공약품, 분석약품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고, 피고는 촉매기술 개발 및 연구, 촉매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피고는 2022. 4. 1. 원고에게 아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담채 공급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담채(지지체) 12,000kg, 대금합계: 16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조건: 거래명세서에 품명, 규격이 발주서/견적서의 내용과 일치, 품질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
- 특기사항
 - 2. 납품 자재 하자 발생시 구매자의 의사 판단에 따라 즉시 교환하거나 전액 변상(구매금액의 100% 한도)합니다.
 - 3. 품질 기준은 3차 양산 제품에 준하는 수준(COA 첨부).
 - 4.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 한다) 계약금 지급 후 3일 이내 계약금 지불.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 이미 3회에 걸쳐 담채공급계약을 체결, 이행하였는데, 그 중 3회차 계약서(이하 '3차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4. 제품사양

Alumina support target		
Pore Size ¹⁾	nm	≥11.7
Water absorption	%	≥82
Strength	N/cm	≥250

6. 성적서 발행

공급자는 제품 출하 전 위 4.항에 해당하는 분석항목을 기준으로 발행된 성적서를 생산자 (New Material Co., Ltd)로부터 제공받아서 구매자에게 전달한다.

8. 담체검수

8.1 담체 검수는 최종 사용자가 보유한 분석기기를 통하여 수행하고, 최종 사용자 측에서 분석한 결과 값으로 검수 합격 유/무를 판단한다. 최종 사용자가 측정한 분석 결과 값과 생산자가 발행한 성적서 값이 상이하게 차이 날 경우 분쟁 조정방법에 따라 해결한다.

8.2 구매자는 제품 인수 후 13일 이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제품에 이상이 없을 경우 3 일 이내 제품 인수증을 공급자에게 교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담체를 납품(이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한 담체를 '이 사건 담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생산자가 제공한 성적서를 전달하였는데 그 성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uyer								
Weight	12000KGS							
Product name	Alumina catalyst carrier(4-lobe)							
Date	Batch No.	Water absorption (%)	Strength (N/cm) New Instrument	Strength (N/cm) Old Instrument	CBD (g/ml)	Pore volume (ml/g)	Surface area (m ² /g)	Pore size (nm)
2022.04.29		77.61	174.2	203.5	0.505	0.749	274.94	10.89
2022.04.30		77.42	169.2	198.5	0.501	0.750	276.93	10.83
2022.05.05		78.57	158.1	185.3	0.501	0.748	275.82	10.85
2022.05.06		78.26	168.2	196.2	0.503	0.751	273.96	10.97
2022.05.07		78.24	179.9	205.7	0.501	0.754	272.55	11.06
2022.05.08		81.27	170.2	197.1	0.503	0.753	273.61	11.01
2022.05.09		81.37	175.1	201.3	0.502	0.754	273.08	11.04
Test result	Passed							

1) 계약서에는 "Mean Pore Diameter"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로 판단된다.

마. 한편 원고가 3차 계약서에 따라 담체를 납품하면서 피고에게 전달한 성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uyer									
Weight	14000KGS								
Product name	Alumina catalyst carrier(Butterfly)								
Date	Batch No.	Water absorption (%)	Strength (N/cm)	CBD (g/ml)	Pore volume (ml/g)	Surface area (m ² /g)	Pore size (nm)	Pellet size	
								Length (mm)	Diameter (mm)
2021.08.06		80.39	203.84	0.497	0.780	258.45	12.078	3~10	1.2*1.4
2021.08.07		81.59	204.61	0.498	0.788	257.62	12.24	3~10	1.2*1.4
2021.08.09		79.86	189.09	0.499	0.769	256.43	12.00	3~10	1.2*1.4
2021.08.10		81.98	200.05	0.501	0.796	254.67	12.50	3~10	1.2*1.4
2021.08.11		81.47	184.73	0.500	0.774	254.91	12.14	3~10	1.2*1.4
2021.08.12		80.02	186.61	0.502	0.778	253.14	12.29	3~10	1.2*1.4
2021.08.13		79.38	185.47	0.498	0.781	254.29	12.29	3~10	1.2*1.4
2021.08.14		81.87	190.28	0.496	0.771	255.69	12.06	3~10	1.2*1.4
Test result	Passed								

바. 피고는 2022.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담체는 Water absorption, Strength 기준이 3차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담체로의 교체 또는 본 발주 취소를 요청드린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3차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3차 계약서 8.1조는 담체의 최종사용자인 [redacted] 검수 합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redacted] 검수 결과 합격이라고 판단하면 생산자가 제공한 성적서가 피고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와 상관없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차 계약의 경우에도 성적서상의 사양이 계약서에서 제시한 제품사양에 미달하였으나 [redacted] 검수 결과 합격 판단을 받았다(갑 제12호증). 따라

서 피고는 이 사건 담체를 [redacted] 하여금 검수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redacted] [redacted] 판단 없이 피고가 자체적으로 이 사건 담체의 성능이 미달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결국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담체의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담체를 수령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6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redacted]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담체의 성적서가 3차 계약에서 제시된 성적서에 미달할 경우 [redacted] 게 검수를 의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며, 피고의 수령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022. 5. 20.자 이행의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2. 10. 11.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3차 계약서 4조는 제품사양을 명시하고 있는바, 8.1조는 원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제품사양을 충족하는 성적서를 제출하더라도 [redacted] 자체 검수 결과 불합격 판단을 하면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원고가 제시한 성적서가 피고가 제시한 제품사양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발주서 특약사항 제2항에 의하면 "납품 자재 하자 발생시 구매

자의 의사 판단에 따라 즉시 교환하거나 전액 변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시 3차 계약서와 같은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특약사항이 3차 계약서 8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REDACTED] 검수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하자를 판단하여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담체의 수령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3항은 "품질 기준은 3차 양산 제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담체의 성적서는 Water absorption, Strength, Pore Size 항목에서 3차 계약서 4조가 정한 제품사양 뿐 아니라 원고가 3차 계약에 따라 납품한 담체의 성적서에도 미달하는 점, Water absorption, Strength 항목의 경우 [REDACTED] 자체 검수 결과가 원고가 제출한 성적서보다 더 높게(원고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Pore Size는 성적서와 거의 동일하게 측정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 담체의 성적서에 의하면 Pore Size 항목이 제품사양 및 3차 계약의 성적서 보다 확연히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담체 수령거절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본입니다.

2023. 7.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원주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